

구주권 제출불가 주주의 이의최고 공고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당사”)는 상법 제360조의9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개최된 당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홀딩스(“알보젠코리아홀딩스”)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4월 24일부로 당사는 알보젠코리아홀딩스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알보젠코리아홀딩스는 당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부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법은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뜻을 공고한 이후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1, 제443조, 제442조 제1항). 이에 따라 당사는 2019년 4월 23일까지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주주 및 질권자 등으로부터 이의최고 청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고한 주주 및 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31일 이후 아래 주식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인바, 아래 주식에 대한 교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최고 청구 내역

#	당사자명	주소	주식수	구분
1	김창학 (근화제약우리 사주조합장)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40	30	

2. 이의 제기 방법

- ① 본인 방문 시: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이의제기 사유서,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급)
- ②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본인, 대리인), 본인 인감도장, 이의제기 사유서, 본인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참고로 당사는 이의제기기간 이후 위 주주 및 질권자들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이의제기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과 관련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

대표이사 이준수 (직인생략)